

<b>보도</b>	<b>2023.12.21.(목) 14:00</b>	배포	2023.12.21.(목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은행검사1국 상시감시팀	책임자	국 장	김성욱	02-3145-7050
		담당자	팀 장	황준하	02-3145-7065
	은행검사2국 상시감시팀	담당자	팀 장	김우현	02-3145-7210
	은행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	김시일	02-3145-8350
		담당자	팀 장	김지웅	02-3145-8330

## 2023년 하반기 은행(지주)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

- ☞ 금감원, 최근 금융사고에 대응한 「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」 개선안 발표
- ☞ 은행권, 「책무구조도 도입방안」, 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사례 등 발표
- ☞ 연구기관, 최근 디지털 내부통제(Regtech) 관련 국내외 사례 발표

### I . 개 요

- 금융감독원(원장 이복현)은 '23.12.21일(목) 14시,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'23년 하반기 은행(지주)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
  - 동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, 금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(8개사)와 은행(20개사)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
-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고에 대응하여 「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」 개선안을 발표하고, PF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
  - 은행권 및 연구기관은 레그테크(Regtech) 국내외 사례, 고위경영진 책무구조도 도입 방안, 은행지주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사례 등을 발표하고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

#### 은행(지주) 내부통제 워크숍 프로그램

시간	발표 주제	발표자
14:00~14:05	[개회 및 모두발언]	박충현 부원장보
14:05~14:30	① 외부 전문가 특강 - 디지털 내부통제(Regtech)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	우리금융경영연구소
14:30~15:00	② 최근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- 최근 금융사고에 대응한 '내부통제 혁신방안' 보완 - PF대출 관련 금융사고 내부통제 현황 및 당부사항 - 은행 전세대출 사기 사례 및 당부사항	금감원 은행검사1국 금감원 은행검사2국 금감원 은행검사3국
15:00~15:30	③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- 고위경영진 책무구조도 도입 방안 - 은행지주그룹 표준 내부통제 체계 구축 사례 - 비대면 대출에 대한 이상탐지시스템(FDS) 운영사례	신한은행 하나지주 케이뱅크
15:30~16:00	④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	

## II. 주요 논의내용

◇ 금일 워크숍은 크게 ①디지털 내부통제(Regtech)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, ②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, ③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음

### 1. 은행담당 부원장보 모두 발언 요지

- 금융감독원 박충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
  - 최근 은행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(刻苦)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
    - 금일 발표한 「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」 개선안과 관련하여, 은행내규 반영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
  - 아울러 박충현 부원장보는 내부통제의 2선·3선을 담당하는 준법감시부와 감사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,
    -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·보완하고 은행내에 확고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음

### 2. 디지털 내부통제(Regtech)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

-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'규제(Regulation) 준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(Technology)'을 뜻하는 레그테크(Regtech)가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으며,
  -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(AML)·여신·마케팅 업무 등에 레그테크를 도입해, 대용량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, 인적오류 방지, 준법감시 프로세스의 효율화 등을 달성하고 있고,
    - 국내은행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해 레그테크 시스템의 개발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음

#### [ Regtech 해외사례 ]

- ① **(대용량 데이터 처리)** DBS는 AI 거래 감사 플랫폼(CRUISE)을 구축해 위험거래를 식별하고 담당직원의 의심거래 분석 및 적발업무를 지원
- ② **(인적오류 방지)** J.P.Morgan은 AI가 적용된 계약 검토 소프트웨어(COIN)를 도입해, 인간의 해석오류를 방지하고 대출계약서 내 조건과 잠재 리스크를 식별
- ③ **(프로세스 효율화)** Fidelity는 AI 자동심사 기능, 실시간 협업 기능이 탑재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(Saifr)을 구축해, 광고 심의 절차를 효율화하고 부서 간 소통오류 방지

### 3. 「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」 개선안

□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「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\*」의 보완을 추진해왔으며, 금일 개선안을 발표

\*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사고 발생 후 총 4개 부문 29개 과제로 구성된 「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」을 마련(22.11월) 하였으며, 현재 일정에 따라 추진중 (<붙임 2> 참조)

○ 개선안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방안을 보완하고, 혁신방안의 조속한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

- ①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, ②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, ③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 강화, ④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, ⑤고발업무 강화, ⑥KPI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 (☞세부내용 <붙임 1> 참조)

#### [ 「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」 개선안 ]

① (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) 장기근무자 인사관리,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 등의 장기 과제 이행시기를 최소 6개월~최대 2년 단축

② (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)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관련 업무 경력(준법, 감사, 법무 등) '2년 이상'에서 '3년 이상'으로 강화

③ (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 강화) 기업금융, 외환·파생운용 담당 직원에 대해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\*을 마련

\* 특별명령휴가제도 도입, 영업(front)과 자금결제(back) 업무 분리, 장기근무시 담당 기업 등은 2년마다 순환 등

④ (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)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,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, 사후관리 등 PF대출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가

⑤ (은행 고발업무 강화) ①고발대상 및 ②필수 고발사항, ③고발제외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은행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

⑥ (KPI 관리 강화) KPI가 특정 상품 판매실적과 연계되어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

□ 동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\*(23.12월) 등을 거쳐 '24.4.1. 시행될 예정으로, 금감원은 기존의 혁신방안은 물론 금번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

\* 은행연합회는 '23.12월중 「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」, 「금융사고 예방지침」, 「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」 등의 개정을 추진

## 4. 전세대출사기 사례 및 당부사항

□ 금감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대출사기와 관련하여, 일부 전세대출 심사시 주택시세 및 선순위 근저당금액 미확인 등에 따른 문제점\*을 설명하면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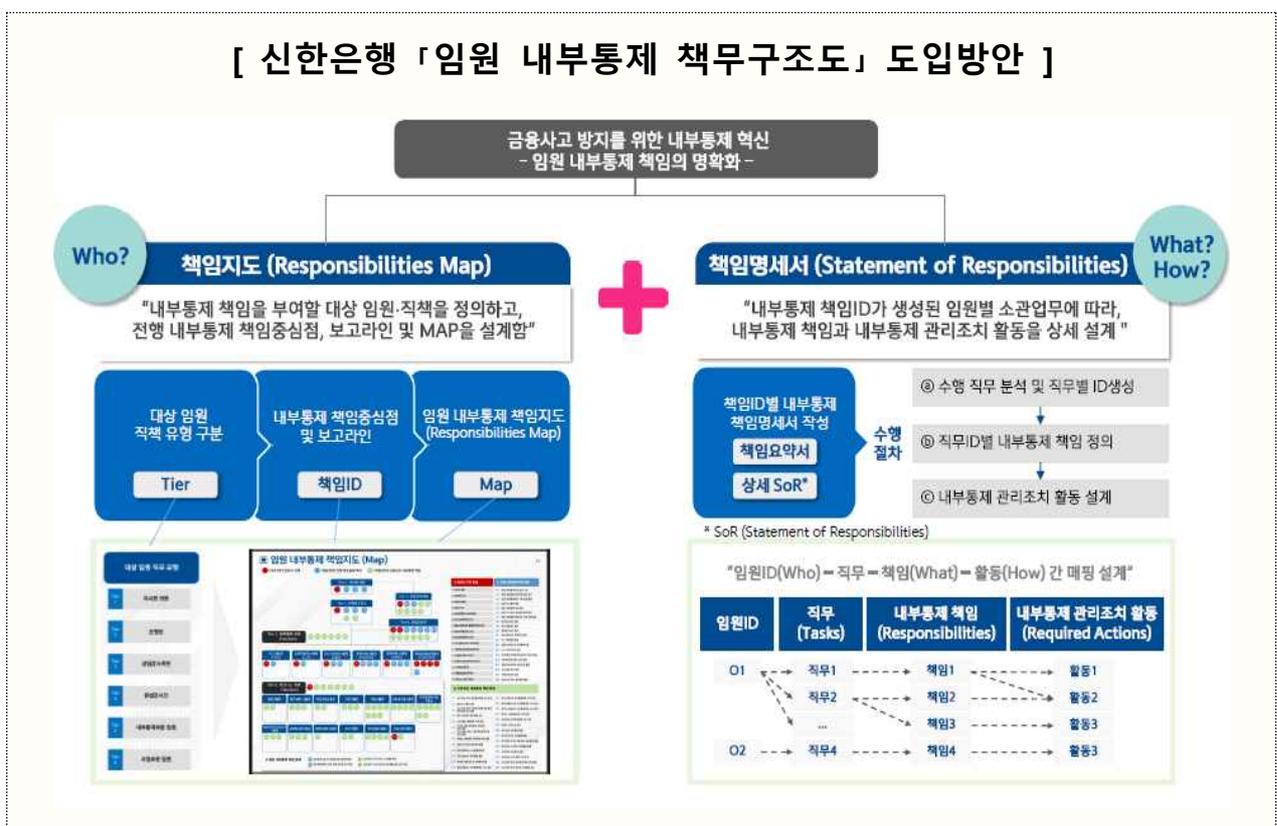
\* 은행을 상대로 한 전세대출사기 및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등에 취약하고, 은행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

- 전세대출 취급시 임차목적물 주택 시세 및 선순위채권 확인 등을 통한 전세대출사기 예방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

## 5.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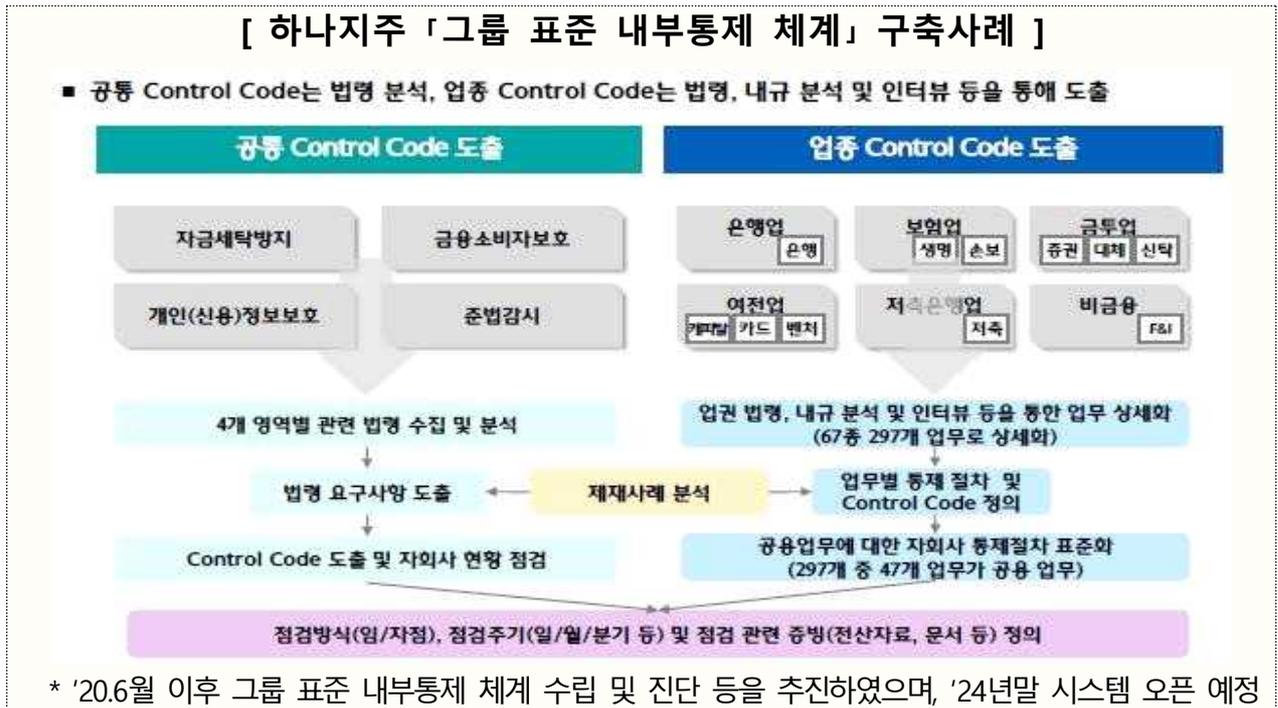
① (신한은행) 『지배구조법』 개정과 관련하여 고위경영진 책무구조도 도입방안 사례 등을 은행권과 공유

- 내부통제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상 임원 및 직책을 정의하고 보고라인, 책임지도(Responsibilities Map)를 설계하였으며,
- 소관 업무에 따른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및 임원이 해야 할 내부 통제 관리조치 활동을 상세하게 기술(Statement of Responsibilities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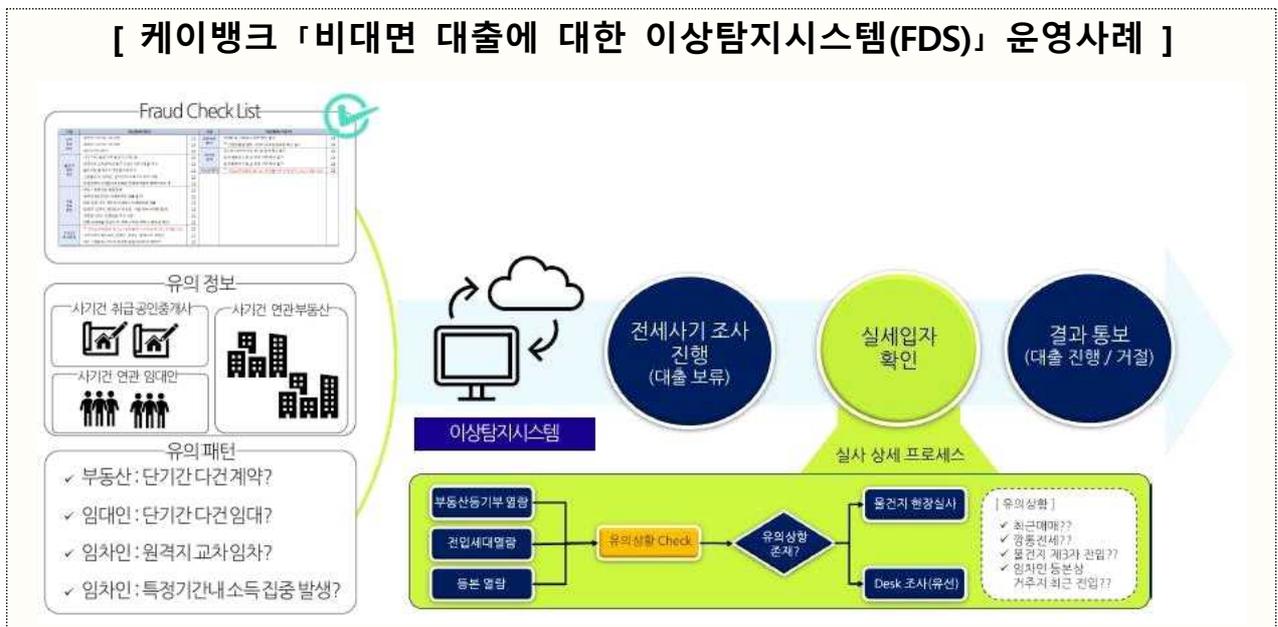
② (하나금융지주) 은행지주그룹의 표준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지주의 그룹 내부통제 강화 사례를 공유

- 준법감시 업무에 대한 그룹 표준을 적용하여 관계사간 준법감시 업무 격차를 해소하는 등 지주사의 자회사 관리 기능 강화 예정



③ (케이뱅크) 은행 대출사기에 대응하여 비대면 대출에 대한 이상탐지 시스템(FDS) 운영사례 등을 공유

- 이상탐지시스템을 통해 유의정보(사기건 취급 공인중개사 등), 유의패턴(단기간 다건 계약 및 임대 등) 등을 점검하고, 특이사항 발견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비대면 전세대출 사기에 대응



### Ⅲ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--

- 금일 워크숍은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 내부통제의 취약부문을 재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하고 뜻깊은 자리였으며,
  - 특히, 책무구조도 도입방안, Regtech 사례, 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내부통제에 관한 다양한 실제 운영사례가 공유됨에 따라 은행권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
  - 이를 위해 앞으로도 매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한편,
  - 기존에 추진중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금번 개선안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

- [붙임] 1. 「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」 개선안  
2. 「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」 (개선안 반영 후). 끝.

- 지난해 마련한 「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」은 당초 계획대로 이행중에 있으나, 최근 금융사고 발생 등에 대응\*하여 동 방안을 보완할 필요

\* ①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금 횡령, ② 대구은행 무단 계좌개설 등

- 그간 은행권과 내부통제 혁신방안 보완방안을 지속 논의해왔으며, 은행연합회도 현재 관련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 중\*

\* '23.12월중 「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」, 「금융사고 예방지침」, 「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」 개정 예정이며, '24.3월말까지 은행 내규 반영 및 '24.4.1. 시행 예정

## 1.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

- **(현황)** 당초 혁신방안 마련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등 일부 과제의 경우 '25~ '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경과규정 마련
- **(개선안)** 장기근무자 인사관리, 준법감시인 자격 강화,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,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등의 이행시기를 6개월~2년 단축

- \* ① **(장기근무자 인사관리)** 장기근무직원을 전체 직원의 5% 이하로 관리('25년말→'24년말), 장기근무 승인을 최대 2회까지 허용(은행장 승인은 1회)('26.1.1.→'24.8.1.)
- ② **(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)** 준법감시인 선임시 자격요건에 관련 업무(준법·감사·법무 등) 경력 추가('25.1.1. 선임시→'24.1.1. 선임시)
- ③ **(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)**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직원의 최소 0.8% 이상 & 15명 이상 확보('27년말→'25년말)
- ④ **(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)** 비밀번호를 대체할 소유, 생체기반 인증방식 도입, 확대 ('24.1.1.~25.1.1.→'24.1.1.~'24.7.1.)
- ⑤ **(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)** 기안, 날인, 지급시스템간 연계 체계 구축 및 단계별 중요사항 검증 의무화('24.1.1.~25.1.1.→'24.1.1.~'24.7.1.)

## 2.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

- **(현황)** 준법감시인\* 자격요건이 관련 경력(준법, 감사, 법무 등)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성 확보가 미흡할 우려

\* 지배구조법상 요건인 '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경력자'로 준법감시인 선임시

- **(개선안)**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관련 업무 경력(준법, 감사, 법무 등) '2년 이상'에서 '3년 이상'으로 강화

### 3.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강화

- **(현황)** 기업금융, 외환·파생운용 담당 직원 등에 대하여 전문인력 관리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순환근무 적용 배제
  - 이에 따라 장기근무자 비율 관리(전체 직원의 5% 이하), 장기근무 승인시 사고위험통제 가능성 심사 등 강화된 인사관리 기준 미적용
- **(개선안)** 전문인력 특성을 감안해 순환근무 적용배제는 인정하되,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
  - 장기근무(동일 본부부서 5년, 동일 영업점 3년 초과)에 해당하는 기업금융, 외환·파생운용 담당 직원에 대하여는 동일 기업 등에 대한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,
    - 특별 명령휴가제도(일반 명령휴가 외에 별도 실시),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함

### 4. 부동산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자금집행체계 강화

- **(현황)** 부동산 PF대출 관련하여 약정서 등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PF대출금이 지급되도록 제한하는 등 자금집행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
- **(개선안)** ①지정계좌 송금제 도입\*, ②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, ③사후관리 등 PF대출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가

\* 대출금 지급계좌 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 계좌에 대해서도 사전 지정·운용토록 명확화

- ① **(지정계좌송금제)** 대출금 지급계좌 및 은행이 원리금을 상환받을 부점명의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고, 대출실행 및 원리금 상환이 동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되도록 통제하는 장치 마련
- ② **(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)** 자금집행시 자금인출요청서의 전자문서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, 회사 공용메일을 통한 수신, 차주앞 거래내역 통지 등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
- ③ **(사후관리)**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의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은행이 대리은행 업무 수행시, 대리은행 자금관리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

## 5. 임직원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

- **(현황)** 은행권은 횡령·배임 등의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
  - 기본적으로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 ①고발제외시 기준·절차, ②필수 고발대상, ③사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다소 미흡한 측면
    - \* 구체적인 기준 없이 건별판단(정상참작 등) 및 내부절차(①인사위결정, ②은행장 결정)만으로 고발제외 ⇨ 세부기준이 없어 자의적·온정적 판단 소지
- **(개선안)** ①고발대상 및 ②필수 고발사항, ③고발제외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토록 개선

- ① **(기본 원칙)** 고발대상을 **범죄혐의**로 포괄 명시하고 고발대상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명시
- ② **(고발 제외 및 필수 고발 기준)** 자의적 고발업무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고발제외가 가능한 유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 등을 명시하고, 예외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할 범죄 유형, 금액 기준, 그 외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내규에 명시
- ③ **(사후관리)** 고발 주체(부점장)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고발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 등의 사후관리(점검) 및 미고발시 고발 지시 및 필요시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

## 6. 임직원 성과평가지표(KPI) 관리 강화

- **(현황)**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직원 성과평가지표(KPI)를 연계시 금융사고\* 및 불건전영업행위 발생 가능성 증가
  - \* 최근 발생한 일부 은행의 증권계좌 무단개설 사고와 관련해서도 증권계좌 개설 독려를 위한 KPI 강화가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작용
- **(개선안)** KPI가 특정 상품 판매실적과 연계되어 금융사고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토록 체계 구축

**붙임 2**

**「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」 (개선안 반영 후)**

구 분	주요 내용	이행시기	비고
<b>가.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</b>			
1. 준법감시부서 인력규모·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	①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직원의 최소 0.8% 이상 & 15명 이상(대형은행 기준) 확보	'23년말~ '25년말	이행시기 조정
	②부서 내 전문인력 20% 이상 확보 및 주요 6개 분야별로 최소 1명 이상 확보	'25년말	
2. 준법감시인 선임시 자격요건 강화	①선임 시 자격요건에 <b>관련업무(준법·감사·법무 등) 경력(3년 이상)</b> 추가	'24.1.1 (경력 3년 이상은 '24.1.1)	이행시기 조정 및 보완
3.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	①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5% 이하로 관리	'24년말	이행시기 조정
	②장기근무 승인권자 상향,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등 심사 등 <b>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</b> 마련	'23.4.1 (최대2회 승인 허용은 '24.8.1)	이행시기 조정
	③순환근무 적용 배제대상인 <b>기업금융, 외환·파생 운용 담당 직원</b> 에 대한 <b>별도 사고예방대책</b> 마련	'24.4.1 (동일기업 담당 기간 제한은 '24.8.1)	추가
<b>나.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</b>			
1. 명령휴가 제도	①명령휴가 대상자 확대 및 위험직무자 등 강제 명령휴가 의무화	'23.4.1 (시스템은 '23.7.1)	보완
2. 직무분리 제도	①직무분리 대상 고위험 거래 범위 확대·구체화, 관리시스템 구축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	'23.4.1 (시스템은 '23.7.1)	보완
3. 내부고발자 제도	①내부고발 익명성 강화, 유형별 보상기준 마련, 고발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의무화	'23.4.1	
4.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	①지점 및 본점 부서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, 자점감사 등 내부통제 활동과 연계	'23.7.1	
	②예방대책의 직무별·직급별 역할, 책임 구체화	'23.4.1	
<b>다.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추진</b>			
1.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	①비밀번호를 대체할 <b>소유·생체기반 인증방식</b> 도입·확대	'24.1.1~ '24.7.1	이행시기 조정
	②시스템 인증수단 관리실태 점검 강화	'23.4.1	
2.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	①기업구조조정 관련 공동자금 채권단 검증 의무화	'22.11.28	
3.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	①기안→날인→지급시스템간 연계 체계 구축 및 단계별 중요사항 검증 의무화	'24.1.1~ '24.7.1	이행시기 조정
4.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	①수기문서 전산 등록·문서번호 자동 부여 의무화, 수기 접수문서 활용 시 검증 체계 구축	'23.7.1	
5.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	①지정계좌 송금제 도입,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, 사후관리 등 PF대출 <b>자금집행체계 강화</b>	'24.4.1	추가
<b>라.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등</b>			
1. 상시감시 대상 확대·체계화	①상시감시 대상 본점까지 포함, 중요 이상지표 보고·처리·사후관리 체계 강화	'23.4.1	
2.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	①자점감사 결과보고 체계화, 자점감사 부실징후 영업점 현장점검 절차 마련 등	'23.4.1	
3. KPI 관리 강화	①KPI가 불건전영업행위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<b>KPI의 적정성 점검</b>	'24.4.1	추가
4. 고발업무 강화	①필수 고발대상, 고발 여부판단 기준 등 <b>구체화</b>	'24.4.1	추가